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2015. 3. 9.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8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KOSBIR 제도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공포 (2015.1.28)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방법 및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

나. KOSBIR 제도 "연구개발예산" 기준 마련(안 제11조2항 개정)

- 법에서 위임한 KOSBIR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

다. KOSBIR 제도 “지원비율” 산정기준 마련(안 제11조3항 개정)

- KOSBIR 의무비율 차별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라. KOSBIR 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안 제11조4항 신설)

- 시행령에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 명문화하여,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대상사업으로 인정

마. “대상사업 통합공고” 명시(안 제11조9항 신설)

- KOSBIR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별로 추진하던 사업공고를 중소기업청에서 통합공고 실시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3996, Fax : 042-472-328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예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평균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다음연도 지원비율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의 평균치로 한다.
2. 당해 연도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평균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다음연도 지원비율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정한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 증가율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

2. 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업

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통합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5조의3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기상청

2.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비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하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예산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평균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다음연도

고, 이를 해당 기관의 다음 해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⑤ (생략)

⑥·⑦ (생략)

지원비율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의 평균치로 한다.

2. 당해 연도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평균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다음연도 지원비율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정한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 증가율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30% 이상인 사업

2. 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업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신 설>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

같음)

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통합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_____ 법 제15조의3 제1항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법 제15조의3 제1항 _____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_____.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산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3996